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05도9114 식품위생법위반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 심 판 결 전주지방법원 2005. 11. 11. 선고 2005노788 판결  
판 결 선 고 2006. 2. 2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구 식품위생법시행령(2005. 7. 27. 대통령령 제189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 8호 라.목에서 유흥주점영업을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유흥종사자를 둔다'고 함은 부녀자에게 시간제로 보수를 지급하고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게 하는 경우도 포함되고, 한편 특정다방에 대기하는 이른바 '티켓걸'이 노래연습장

